

재활용분야 질의 응답

2003년도 농약공병 회수처리 실적

2003년도 1년간 농약공병 회수처리실적(전국)과 경북 지사에서 회수처리한 실적 공병 갯수 및 물량, 농약공병 회수율, 보상금 지급금액, 보상금 지급단가, 주요 회수방법(경로), 회수상 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3년 농약빈병 회수실적(전국)은 39,363천개이며 농약빈병 처리실적(전국)은 39,145천개입니다.

농약빈병 회수실적(대구경북지사)은 7,135천개, 농약빈병 처리실적(대구경북지사)은 6,932천개입니다.

농약빈병 회수사업계획대비 97% 달성했으며, 농약빈병 수거비용은 1,818백만원입니다. 수거단가는 개당 50원(유리병 : 15원/kg, 플라스틱 : 800원/kg)이며 회수방법은 농민들이 마을별 집하장에 모아놓은 후 공사사업소에 연락을 하면 공사에서 수거하거나 공사에서 순회수거합니다.

폐기물부담금 관련 질의

2001년 이전에도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였는지 궁금하며, 폐합성수지 처리시에 매번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부담금과 함께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 또한 과거 실적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전액 유예시켜 주실순 없는지, 차후로

는 수입시마다 부과금을 관세와 함께 납부토록하여 수입업체로서도 원가계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폐기물부담금은 1993년부터 부과하고 있으며, 대상제품의 폐기처리비용 일부를 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담금 부과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질의내용 중 관세와 함께 납부토록 하는 방법 등은 관세청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귀사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협의토록 하겠으며, 향후 수입시에는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하는 통합공고의 품목별수입요령을 참조하시고 자원재생공사 관할지사에 문의하여 매 수입시 폐기물부담금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배출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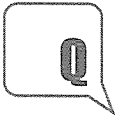
320g용 튜브 제품이 있는데 상부에는 제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알루미늄 LID를 사용하고 (크기2센티 미만 원형)LID위를 스크루 캡을 이용 밀폐 (뚜껑 용량20g이하)하며, 표기사항의 원활 및 외관의 향상을 위하여 수축필름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용기와 수축필름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이 확실하여 표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상기의 LID 와 뚜껑이 대상 제외품목에 해

당하는지입니다.

뚜껑도 분리배출표시대상입니다. 다만, 뚜껑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표시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종이케이스 분리배출표시

종이는 분리배출표시 대상 품목이 아니며, 종이에 표시를 원할 경우 신청 후에 사용하라고 하시더군요.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라 하시기에, 종이 케이스나 박스에는 종이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형 유통 매장에서 모든 재질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라고 하면서, 케이스에도 종이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은 일제 받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면 신청 절차는 무엇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에 대해 표시를 해서 납품하라 요구하는 것은 또한 무엇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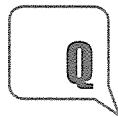
종이케이스에 표시를 요구한다면 박스에도 표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형 마트에서는 박스 구입도 종종 하는데, 케이스로 사는 소비자들은 종이 분리배출을 인식하지 못해서 표시해 줘야 하고, 박스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종이 분리배출에 대해 잘 알고있다는 뜻인지...

종이가 표시 대상 품목이 아니고, 종이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면, 관련 문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 18조에 의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품목에 종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EPR홈페이지<분리배출표시제도>관계법령·고시)

종이는 의무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 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표시품목은 현재 국내에서 재활용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정신청제도는 그 외의 제품·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여부, 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에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입

니다.



제조용 원료 분리배출 여부

식품첨가물(예:향료 산미료 등)등을 수입하여 각 제과, 음료 관련 업체에 원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질은 품목별로 종이 캔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인데, 이같이 일반소비자 대상이 아닌 업체의 제조용 원료인 경우도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식품공전에 등재된 식품이 아닌 식품첨가물은 의무 표시품목이 아니므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데

PET병 밑에 PET분리배출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데, 스티커 부착 시 스티커에도 표시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기 자체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박도시락 분리배출 표기 상품인지

은박도시락(동일제질의 은박접시)가 분리배출 표기상품인지, 은박도시락(접시)를 여러 개씩 비닐포장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닐포장지 자체를 분리배출표기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닐포장지는 인쇄된 것과 인쇄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은박도시락은 표시대상이 아니며, 비닐포장지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